

학대피해아동쉼터(남아시설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0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3. 6.

제안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 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필요성
 - 학대피해를 입은 남성 아동의 성별 및 고유한 환경적 상황에 맞춰진 보호환경 조성
 - 민간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효과적인 시설 운영 필요
 - 기 설치한 여아 전용 쉼터에 이어서 남아 전용 쉼터를 추가 설치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남양주시 관내 보호체계 강화

2. 위탁사무 내용

- 학대피해아동쉼터 유지·관리 및 운영 전반
-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, 생활지원, 상담 및 치료, 교육 및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등

3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비공개시설(입지 조건에 맞는 주택 조사 중)
- 규모 : 110.54㎡(전용면적)
- 아동정원 : 남아 7명
- 종사자 : 6명(시설장 1, 보육사4,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)

4. 민간위탁 기간

- 5년 단위 위탁계약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)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 진행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(총 708,232천원 예산확보)

(단위:천원)

구 분	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지원			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			학대피해 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			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(도비)			학대피해 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			학대피해 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		
	국	도	시	국	도	시	국	도	시	국	도	시	국	도	시	국	도	시
708,232	552,300			123,947			13,465			13,520			1,000			4,000		
보조율 %	40	-	60	40	30	30	-	30	70	-	30	70	-	100	-	-	30	70

7.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영 운영 가능하나, 시비 100% 예산 소요 ○ 관련 지침상 국고 보조대상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경우이므로 직영 운영할 경우 설치비, 운영비 등 시비100%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예산절감 측면에서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효율적임.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 ○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, 인력 채용·관리 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.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 ○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기본적 기능(숙식제공, 심리상담·치료, 학습 및 정서지원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며, 기존 설치한 여아학대피해아동 쉼터와의 협력 체계 등의 조정적 장치 마련 가능함.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 ○ 피해아동의 심리검사, 상담·아동관리 능력, 생활지도 등의 아동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접근 등 전문 종사 인력의 고용과 관리로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함.

구 분	검 토 의 견
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걱정 ○ 시설평가 및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성과를 측정 <p>※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</p>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걱정 ○ 위탁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및 감독하여 관리하고,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설의 민주적 운영, 투명성 제고 및 입소아동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음. <p>※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·감독 등), 제43조의2(시설의 평가)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,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(운영위원회)</p>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걱정 ○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기 설치한 학대피해아동 쉼터(여아) 운영의 경쟁력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음.
총 합 의 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우리시는 학대피해를 입은 남아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. 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남녀 발생비율은 비슷하여 남아전용 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함. ○ 또한 민간위탁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의 국고 지원이 가능하며,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가진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8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수탁자의 자격 : 비영리법인(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)
 - ※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-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
- 선정 기준 : 수탁자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 간 균형 분포,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, 법인의 정관 등을 심의하여 선정